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98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 박홍배・이개호・이용우

김남근 • 이광희 • 윤준병

박희승 • 민병덕 • 고민정

김태선 • 백승아 • 박정현

이재정 · 서영교 · 박수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'생태·경관보전지역'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, 누구든지 생태·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.

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태·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.

또한, 하천유역에 인접하는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 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기지정된 보호지역의 하천 관리 및 하 천 주변지역의 보호지역 신규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. 이에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「하천법」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·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예외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함(안 제1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
- 10. 「하천법」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·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. 이 경우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	제15조(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
의 행위제한 등) ① (생 략)	의 행위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	
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9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
	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
	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
	<u>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</u>
	획하는 경우
<u><신 설></u>	<u>10. 「하천법」 제27조부터 제3</u>
	0조까지에 따라 홍수예방을
	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
	지・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
	우. 이 경우 하천공사 및 유지
	•보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
	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
	<u>여야 한다.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